

1996. 5.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제정및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체안설명자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96. 5. 3.	'96. 5. 8.	제1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96. 5. 14)	시청과장
충주시통 및 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	-	-
충주시리장정원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증 개정조례안	-	-	-	-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	-	-	-	-
충주시시세조례증 개정조례안	-	-	-	세정과장
충주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	-	-	-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 개정조례안	-	-	-	-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증 개정조례안	-	-	-	시민생활 지원과장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 조례증개정조례안	-	-	-	-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1) 제안이유

-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타시군 출신 인사에게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더큰 관심과 공지를 가지고 충주지역발전에 참여토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명예시민증 수여대상, 추천방법, 대상자결정절차, 명예시민증을 받은자의 혜택 및 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아파트단지가 신설된 지역과 행정구역이 과대한 지역의 리통반을 재조정하여 국민편익증진 및 원활한 면동 행정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적정규모의 리통반을 증설
 - 교현 2동 : 2개동 12개반
 - 연수동 : 1개동 7개반
 - 목행동 : 3개동 16개반
 - 상모면 : 1개리

다.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모면 온천 3리가 행정구역 조정으로 1개리가 증설됨에 따라 리장정원 및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상모면 온천 3리가 온천 3리, 온천 4리로 분할 조정되어 리장정원을 6명에서 7명으로 증원

라.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도서관장의 직렬 및 직급을 현실에 적합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현행 조례에서 도서관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서서주사로 보한다'로 개정

마. 충주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과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소액 지방세 (50만원이하인 시세)는 세무공무원의 수납이 가능토록 신설
-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 구분 조정
-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례로 신설
-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와 변경용어 개정등

■ 1. 충주시시세감면조례증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한 농촌주택의 감면범위확대와 조례운영상의 미비점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년간 면제대상 확대
- 주택개량 대상사업의 관련법규의 명문화
-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제 추가
- 중복감면의 배제 규정 신설등

■ 2.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단계적인 요율조정이 필요함.

2) 주요골자

- 요율조정항목 : 89건 (조정 66건, 미조정 12건, 신규 7건, 삭제 4건)

○ 요율조정내역 (66건)

- 50원인상 : 33건
- 100원인상 : 1건
- 150원인상 : 2건
- 200원인상 : 22건
- 300원인상 : 5건
- 500원인상 : 3건

○ 신규 (7건)

- 500원인상 : 1건
- 1,000원인상 : 1건
- 10,000원인상 : 1건
- 20,000원인상 : 1건
- 30,000원인상 : 1건
- 50,000원인상 : 1건
- 70,000원인상 : 1건

◇ 1.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증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호적법시행 규칙증 개정규칙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업무증 등에서 접수한 출생, 사망에 관한 호적 과태료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
- 과태료부과기준증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을 참작하여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해태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산정 부과

◇ 2.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증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등. 초본 업무증 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시에서 처리하므로서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중 시장에게 접수된 민원사항은 시장이 처리토록 신설

3.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요지

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 지방자치시대의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 증진을 위하여 외국상사를 비롯한 수출증대 기업체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외국인과 내국인중 타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사들의 공로를 찬양하고 격려하는 측면에서 명예시민증 수여제도를 조속히 제정 시행하므로서,
- 그들이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경제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나.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통반증설요인은 아파트단지형성 및 상모면 온천 3리 지역이 비대하여 분할하는 것으로서,
- 교현 2동, 연수동, 목행동의 6개동 3개반과 상모면 온천리의 1개리를 증설하는 것을 골자로 분리 조정함은 적절하며 면동행정수행의 여건이나 규모상 부득이한 조치로서,
-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적정규모의 행정구역 조정을 위하여 제안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통반설치조례 개정과 더불어 '리장정원'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라.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도서관장 직급은 '79년도 내무부장관 승인에서도 지방행정주사로만 되어 있었으나, 현행 조례상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 복수직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서서장 복수직으로 개정하여 해당직렬이 배치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므로서, 제안된 개정조례안은 현실성 있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마. 충주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 조례 제6조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내부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사무위임조례'로 정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며, 소액지방세의 세무공무원 수납조항 신설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 주민세 균등할 세율구분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종전 법인에 포함시켰으나, 개정안에서는 개인으로 분류하여 부과토록 하였으며,

- 자동차 2,500cc이상 3,000cc미만 차량의 경우 32.2%, 3,000cc 초과 차량은 70.3%나 대폭 감액되므로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견해도 있으나 상위법에 준한 것이며, 관계법령에 따라 충청북도 표준안과도 같이 불가피한 개정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충주시시세감면조례증 개정조례안

-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세제감면에 있어서 당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감면되었으나, 영구임대주택 개정안에서는 도시계획세까지 감면하여,
-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의 개념을 조례상에 명문화하고 중복감면의 배제조항을 신설하므로서,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시민에게 수혜 확대 및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은 합법성과 타당성이 있음.

■ 5.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 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등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충북도에서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현실화 추진계획이 기시달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96년 5월 현재 원가보상을 28.7%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음.
- 우리 시에서도 다소나마 원가보상에 가깝게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하는 방안은 부득이한 조치로 검토되며,

- 다만, 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나 시민 개개인에게 사무제공의 원가를 받아들여 자치수입을 증대하므로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게 되는 원리에 쫓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점차적인 인상을 위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충주시로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증 개정조례안

- 출생 및 사망시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인한 과태료 징수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한 것은 행정능률성 제고와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종전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에 따라 차등부과 하던 것을 해태기간별로만 구분하여 부과토록 개정함은 현실면이나 형평성으로 보아 합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동에서도 과태료부과징수, 독촉, 체납처분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조치한 것은 바람직한 사안으로 검토됨.

자.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증 개정조례안

- 주민등록법 제18조에 의한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위임받은 읍면동에서만 처리하여 왔으나,
-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었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에서도 직접 접수된 당해 민원사무는 시에서 처리하도록 제안된 개정조례안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요지

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 '없음'

나.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없음'

다. 충주시리장정원및관찰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없음'

라.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질의]

- 도서관장의 직명을 지방행정주사, 지방사서주사의 복수직으로 한 후 현재와 같이 지방행정주사로 계속 보할 것인지?

[답변]

- 복수직렬을 두는 것은 전문성을 위함이며, 특수직렬에 승진대상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복수직으로 하는 것이며, 현재 사서직종 승진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1. 충주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질 의]

- 50만원이하의 소액지방세는 세무공무원이 수납도록 하였는데 비리발생의 염려는 없는지?

[답 변]

- 50만원이하의 소액지방세는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하였고, 각종 지방세는 현재 자진신고 풍토가 정착단계에 있으며, 이는 오지주민의 편익을 주기 위함임.

■ 2.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 ' 없 음 '

■ 3.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 없 음 '

■ 4.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 없 음 '

■ 5.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 ' 없 음 '

5. 심사결과

- 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 나.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다.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라.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마. 충주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 바.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 사.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아.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자.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봉임

- 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 나.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다.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라.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마. 충주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 바.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 사.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아.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자.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와의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외국인이나 타시군 출신인사 및 충주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수여하는 충주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명예시민증 수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충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시에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 3조 (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 대장을 비치 한다.
② 공로에 관한 조서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 4조 (행정상 혜택수여)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희망시는 충주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제 5조 (명예시민증의 취소)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행정상 혜택도 취소된다.
- 제 6조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심사를 위하여 충주시에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시 마 크

제 호

명예시민증

국가명 또는 주소 :

성명 :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주시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귀하에게 충주시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충주시의 관인을 찍어 증명합니다.

19 년 월 일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주시장

(관인)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Nationality or Address :

Name :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this city, 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on you honorary citizenship of Ch'ung-Ju City

In witness where of, I have affixed my signature and the
official seal of Ch'ung-Ju City to this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signature)

Mayor of Ch'ung-Ju City
Chungch'ong buk-Do
Republic of Korea

(별지 제2호 서식)

명예시민증수여대장

일련번호	수여자 인적사항			공적개요	명예시민증수여상황		
	주소 (국적)	직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수여년월일	수여장소	증정기념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통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교현2동란 제29통 다음에 "제30통 및 제31통"을 연수동란 제63통 다음에 "제64통"을, 목행·용탄동란 제14통 다음에 "제15통 내지 제17통"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2] 리의 반 명칭과 구역의 상모면란중 온천3리를 "제14반 내지 제19반"으로하고 동란에 온천4리를 "제20반 내지 제23반"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각각 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 표] 리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 온천리의 관할구역(행정리)란중 "온천1, 2, 3"을 "온천1, 2, 3, 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를 “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증 "시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를 "시 사무위임조례로"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5조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개인

-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동지역) : 1,800원
- 나.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읍.면지역) : 1,000원
- 다.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제21조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 세액	배기량	씨씨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800cc 이하	100원

1,500㎤ ㎠ 이하	18원	1,000㎤ ㎠ 이하	120원
2,000㎤ ㎠ 이하	19원	1,500㎤ ㎠ 이하	160원
2,500㎤ ㎠ 이하	19원	2,000㎤ ㎠ 이하	220원
2,500㎤ ㎠ 초과	24원	2,500㎤ ㎠ 이하	250원
		3,000㎤ ㎠ 이하	310원
		3,000㎤ ㎠ 초과	370원

2. 기타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배기량 125㎤짜초과 이륜차포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 용이외의 용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1조 본문중 "건설부장관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중 “사업으로 인하여”를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로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으로 하며,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제12조 제1항 본문중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증명등의수수료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1. 증명			
가. 인감에 관한 증명			
1) 인감증명	1 통	400 원	
2) 인감의 개인신고	1 건	300 원	일신고제외
나. 본적, 주소,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 증명	1 통	400 원	
다. 영업에 관한 증명			
1) 농가, 비농가	1 통	350 원	
라.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 통	400 원	
2) 수출실적	1 통	400 원	
3) 분배농지상환 완료	1 통	350 원	
4) 공장등록 증명	1 통	400 원	
5) 실수요자 증명	1 통	350 원	
6) 원자재(시설세, 공업요소)소요량 증명			
가) 가소요량	1 통	4,000 원	
나) 확정소요량	1 통	1,500 원	
7) 시설보유 증명	1 통	500 원	
8) (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사실 증명	1 통	500 원	
9)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 증명	1 통	800 원	
마.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농지	1 통	400 원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가) 대장문서	1 통	400 원	
나) 토지도면	1 통	400 원	
다) 건물도면	1 통	400 원	
3) 공부열람			
가) 기 본 료	시간 당	100 원	
나) 초 과 료	10 분 당	100 원	
4)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 건	150 원	
바.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1 필지	5,000 원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도면의 등본교부	1 필지	400 원	
3)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 통	600 원	
4) 건축부지	1 필지	300 원	
5) 환지예정지 분할	1 필지	400 원	
6)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 필지	400 원	
7)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	1 필지	400 원	
8) 표준주택 설계도면	1 통	1,500 원	
9) 채비지 분할신청	1 통	400 원	
10) 토지대금 완납증명	1 통	400 원	
11)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증명	1 통	300 원	
사.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 증명	1 통	400 원	
2) 세목별 과세증명	1 통	400 원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3) 세목별 납세증명	1 통	400 원	
4) 징수유예증명	1 통	400 원	
아.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 통	400 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 통	400 원	
3) 원천징수용 제증명	1 통	400 원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서	1 통	400 원	
5)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 통	400 원	
자.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1 통	400 원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 통	400 원	
차. 기타증명			
1) 기타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 통	400 원	
2.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가. 일반행정관계			
1) 인, 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 건	100 원	
2) 행정서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1 건	500 원	
3)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가) 신 규	1 건	800 원	
나) 계 속	1 건	400 원	
4)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	1 건	800 원	
5) 기타 각종 인, 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 건	800 원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나.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설치허가			
가) 가설공연장	1 건	4,000 원	
나) 임시공연장	1 건	800 원	
2) 공연장 양수신고	1 건	800 원	
3) 공연장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가설공연장	1 건	2,500 원	
나) 임시공연장	1 건	800 원	
다. 보건사회관계			
1) 마약판매서 및 구입용지 교부신청	1 건	150 원	
2) 이. 미용업소 영업허가증 및 신고필증 재교부	1 건	800 원	
3) 공중목욕탕 영업허가증 및 신고필증 재교부	1 건	800 원	
4) 숙박업 영업허가증 및 신고필증 재교부	1 건	800 원	
5)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 건	800 원	
6) 묘지개장 허가신청	1 건	800 원	
7) 유기장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1 건	800 원	
8)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 설
가) 종합병원	1 건	70,000 원	
나) 병 원 급	1 건	50,000 원	
다) 의 원 급	1 건	30,000 원	
9)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 사항의 변경	1 건	20,000 원	신 설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10)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1 건	10,000 원	신 설
라. 농수산관계			
1)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 통	800 원	
2)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 매	300 원	
3) 농수산물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1 건	1,500 원	신 설
4)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원	1 통	500 원	신 설
마. 상공·동력자원관계			
1) 공장입지 지정승인	1 건	1,500 원	
바. 건설운수관계			
1)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 건	1,500 원	
2)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승인신청	1 건	500 원	
3) 공(시)영주택(증축·개축) 승인	1 건	800 원	
4)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1 건	800 원	
5)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 허가	1 건	1,200 원	
6) 하천(공유수면)허가 변경사항	1 건	800 원	
7)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1 건	1,500 원	
8)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 건	1,500 원	
9) 채비지 명의변경 신청	1 건	800 원	
10) 토지사용(채비지) 승락서	1 건	800 원	
11) 채비지 확인서 (대부매수, 주소변경, 소 유권 변경)	1 건	800 원	
12) 채비지소유권 확인원	1 건	800 원	
13)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 건	800 원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장은 [별표1] 과태료부과대상의 부과대상란중 "제1호" 및 "제16호"에 한하여 한다.

제4조 제2항중 "시장 또는 읍·면장"을 "시장 또는 읍·면·동장"으로
동항 제3호중 "기타 시·읍·면장"을 "기타 시·읍·면·동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의 제목 "부과금"을 "부과징수"로 한다.

제5조 내지 제8조 중 "시장 또는 읍·면장"을 "시장 또는 읍·면·동장"으
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6. 1. 7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제3조 관련)

해 태 기 간	과 태 료	
	법 제130조 위반	법 제131조 위반
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7일이상 ~ 1월미만	20,000원	40,000원
1월이상 ~ 3월미만	30,000원	60,000원
3월이상 ~ 6월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해태이유서

1. 신고(또는 신청) 의무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적 :

주소 :

2. 사건본인의 인지사항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신고(또는 신청) 의무자와의 관계

3. 사건발생상황

사건의 표시 :

사건발생년월일 : 년 월 일

사건신고년월일 : 년 월 일

해태기간 (7일미만, 7일이상 1월미만, 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날인부인)

시·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부 표 자 정 결 표 태 과

자서전

- ① 위반조항은 호적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와 별표1의 근거법령만 해당조문을 기입
 - ② 과태료내역은 [별표2]에 의한 산정금액 기입
 - ③ 해태기간은 신고 해태일수란에 (○)로 구분 표시

(이상 268mm × 190mm)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제18조 및 영제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중 시장에게 민원접수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